

2018년 2월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

고용보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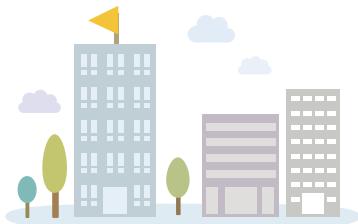


고용노동부



Contents

1. 고용보험에 대하여	01
2. 피보험자관리	04
3. 고용안정사업	05
4. 직업능력개발훈련	18
5. 실업급여	24
6. 모성보호지원	26
7. 자영업자 고용보험	27
8. 일자리 안정자금	30



1 | 고용보험에 대하여

고용보험이란?

▣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다만,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 공사 및 연면적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m²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 제외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 적용이 제외됨

- ❶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❷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단,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생업목적
 (취미·봉사활동 등 제외)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자는
 당연적용 대상 - 예: 대학 시간강사
- 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단,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4장)만 적용
- 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❺ 외국인 근로자: 원칙은 적용제외.
 단,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❻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사 업 체 계

구 분	주요 내용	보험료율
실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이직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 (근로자 0.65%, 사업주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지원, 고용창출지원, 고용촉진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직업정보의 제공 및 지원기반 구축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노동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훈련지원, 노동자 및 실업자 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p>*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산업별 기준 (예: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p>

고용보험 심사제도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가능

심사처리절차



보험료 납부 및 보수총액 신고

- ☞ 사업주는 전년도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자료를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건설업·별목업 제외)

- ✓ 건설업·별목업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하고,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
-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한 경우 3% 할인

-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0.65%)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보수 지급 시 원천 공제함

-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보험료를 부과·징수('14.1.1. 시행)하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보험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 보수총액신고,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 ☞ 지원대상 및 요건: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90만원 미만)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최대 90/100 지원(기가입자 40%, 신규가입자 90%<5~9인 80%>)

◀ 월 보수 160만원 근로자 보험료지원금(예시) ▶

(단위: 원)

구 분		지원 전 보험료부담액		보험료지원금(1~4인)		보험료지원금(5~9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가입자	근로자	10,400	72,000	4,160	28,800	4,160	28,800
	사업주	14,400	72,000	5,760	28,800	5,760	28,800
신규가입자	근로자	10,400	72,000	9,360	64,800	8,320	57,600
	사업주	14,400	72,000	12,960	64,800	11,520	57,600

- ☞ 신청 및 지원방법: 사업주 신청,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www.4insure.or.kr)으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구 분	내용 및 기한	제출 서류	제출 기관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가입지원부)
	사업주는 사업 종료, 근로자 퇴직 등으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 이직확인서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음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가입지원부)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취득·상실·이직이 한 번에 처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가입지원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 또는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과 태 료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 미신고(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4 대 보 험
통 합 신 고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는 4대보험 공통사항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접수 가능하며,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및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등 온라인 신고도 가능

3 | 고용안정사업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휴 업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1개월간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0/100)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행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 수당 등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 단,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 기업도 2/3 지급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6만원 한도로 지원)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를 지급 * 단,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 기업은 3/4 지급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7만원 한도로 지원, 단 대규모 기업은 1일 6만원)
휴 직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휴직을 부여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 단,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 기업도 2/3 지급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6만원 한도로 지원)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 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를 지급 * 단,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 기업은 3/4 지급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7만원 한도로 지원, 단 대규모 기업은 1일 6만원)
훈련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17년도까지 실시한 훈련에 대해 지원, '18년도부터 폐지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 단,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 기업도 3/4 지급 *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연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한도로 지원)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 단,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 기업도 3/4 지급 *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연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6만원 한도로 지원)
무 휴 업 · 휴 직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 무급휴직 신청 전 1년 이내 3개월(조선업특별지원업종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치(휴업 및 훈련) 실시 *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은 노사합의 필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총 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6만원 한도로 지원)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총 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6만원 한도로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60만원 【대규모기업】 월30만원 ※ 6개월 주기 신청 및 지급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 * 제도 도입·시행 후 3개월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증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80만원, 대규모기업, 중견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최대40만원 ※ 3개월 주기 신청 및 지급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지원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월60만원 【대규모기업】 월30만원 ※ 3개월 주기 신청 및 지급 (월할 계산)
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제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복귀기업: 증가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60만원 【중견기업】 월30만원 ※ 3개월 주기 신청 및 지급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월40만원 ※ 3개월 주기 신청 및 지급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고용하는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2018년 499개 업종 또는 277개 주요품목 생산·서비스하는 중소기업	3명 고용 시 1명분의 임금을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 4명 고용 시 1.33명분, 5명 고용 시 1.66명분 지급 ※ 1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 직전연도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최대 30명까지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세부 지원내용〉

❶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정규직 재고용	출산육아기(출산 후 15개월 이내) 계약종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1년 한도)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1년 한도)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후 대체인력 채용한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❷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 | |
|------------------|--|
| ✓ 임금감소보전금 | 주 15시간 이상 주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을 보전 지원
- 주 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주 25~30시간: 월 최고 24만원(단, 임신 근로자는 주 15~30시간: 월 최고 40만원) |
|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 지원 |
| ✓ 대체인력지원금 |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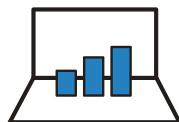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재택·원격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 확산

〈유연근무제 유형〉

유 근 무 연 제	시차출퇴근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지원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p>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40만원 (주 3회 이상 활용시 주 10만원, 주 1~2회 5만원)을 전체 근로자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지원</p> <p>* 사업장당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지원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연간총액(52주 기준)</th> <th colspan="2">1주당 지급액</th> </tr> <tr> <th>주 3회 이상</th> <th>주 1~2회</th> <th>주 3회 이상</th> <th>주 1~2회</th> </tr> </thead> <tbody> <tr> <td>지원금액</td> <td>520만원</td> <td>260만원</td> <td>10만원</td> <td>5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연간총액(52주 기준)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구 분	연간총액(52주 기준)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 기업의 사업주			<p>① 인프라 구축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등▶													
종 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시스템 •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인사·노무 관리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p>② 인프라 구축비 융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p>* 융자 조건: 융자금은 3년간 거치하고 그 거치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 1%, 중견기업 연 2%임</p>									
◀ 지원금 산정 예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투자한 경우													
구 분	기업A		기업B		기업C								
	기업투자	지 원	기업투자	지 원	기업투자	지 원							
계 (투자 총액)	8천만원		8천만원		8천만원								
시스템 구축	6천만원	2천만원 (직접지원)	4천만원	2천만원 (직접지원)	2천만원	1천만원 (직접지원)							
설비·장비 구 축	2천만원	2천만원 (융자지원)	4천만원	4천만원 (융자지원)	6천만원	4천만원 (융자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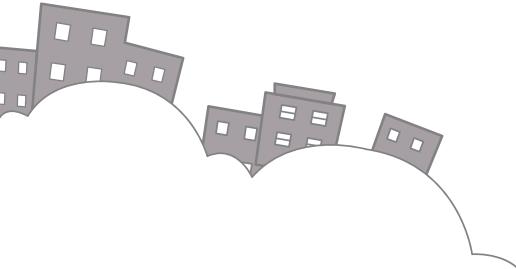
💬 정규직 전환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주로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

청년내일 채움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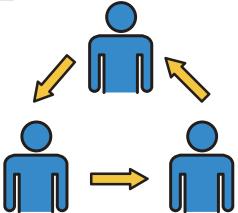
-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적립(매월 12.5만원)시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같이 적립하여 **1,600만원(+이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 만 15세~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세대간상생

☞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사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대하여 청년 신규채용을 촉진

지원대상	지원내용
<p>규모, 업종과 관련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p> <p>*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일부업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외</p>	<p>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p> 

고령자고용

☞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정년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

연장지원금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p>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중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p> <p>* '20.12.31일까지 운영</p>	<p>사업주에게 업종별로 정한 비율(1~23%)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 24만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로 지원 (대규모 기업은 10%) <p>* 60세 이상 장년 근로자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전체 근로자수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에서 각각 제외하고 신청</p> <p>* 지원금 신청전 3개월·신청후 3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p>

임금피크제 지원금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p>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 해당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 *'15.12.4일부터 시행되며, '1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p>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원 까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소득(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7,25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급 제외

☞ 근로시간단축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p>50세 이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된 임금의 일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 근로시간단축 이후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 	<p>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 감소시 감액분의 1/2을 연간 1,080만원 까지 최대 2년간 근로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따른 근로시간단축에 경우에도 지원가능

- 고용 장려금 융자**
- 기업이 여성·고령자·장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근로시간단축, 일가정양립환경 구축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
 - 【상환조건】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이율】 연 2%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령자, 장애인은 연 1%)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 투자융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장비·설비 등을 투자하는 경우 융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의 2/3 이내 융자금액의 한도는 50억원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 1%
여성고용 환경 개선 융자	직장어린이집 또는 여성고용친화시설(여성전용휴게실, 모유수유실, 기숙사 등)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건립, 매입, 임차, 시설 개·보수, 시설전환시 7억원 (공동직장어린이집 9억원) 한도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 1%
고령자·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융자	고령자·장애인 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p>고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당 10억원 한도 이율: 1% <p>장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1인당 1억원, 사업주당 15억원 한도 이율: 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융자	일·가정양립을 위한 재택근무, 원격근무 설비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의 1/2 이내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4,000만원 이율: 우선지원 대상기업 1%, 중견기업 2%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구 분	지원종류	내 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설 치 비	무상지원	시설설치비	단독 3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4억원)	- 시설전환비용·교재교구비 60~90%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영아·장애아 시설 80%)
			공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8억원)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시설 전환·건립 소요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운 영 비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산업단지형 20억원 컨소시엄형 10억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시설전환 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 교재교구비는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신청〉
			교재교구비 5천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운 영 비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월 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부터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근로복지공단 신청〉
			규모별 월 200~520만원	- 39인 이하: 월 200만원 - 40~59인: 월 280만원 - 60~79인: 월 360만원 - 80~99인: 월 440만원 - 100인 이상: 월 520만원 〈근로복지공단 신청〉

일 터 혁 신 컨 설 텅 지 원



- 일터혁신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하고자 컨설팅*, 인사담당자 교육, 중소기업 CEO 혁신코칭, 시간선택제 업종별·지역별 직무모델 개발 및 전파, 기타 인프라 구축 등

* 컨설팅 분야: ① 임금체계 개선, ② 평가체계 구축, ③ 장시간근로 개선, ④ 평생학습체계 구축, ⑤ 노사파트너십 구축, ⑥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⑦ 비정규직고용구조 개선, ⑧ 시간선택제일자리, ⑨ 장년고용안정, ⑩ 일가정양립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컨설팅(8주~15주), 인사담당자 교육 무료 지원 * 사업장은 두 개 컨설팅 분야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취업지원 민간위탁

- 부족한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보완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
–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지급, 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 이용

사업구분	지원내용
취 약 계 층 전 담 취 업 지 원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접근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공공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숙인, 건설일용근로자 등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운영을 지원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운영	구직자의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취업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고용센터 인소싱 방식으로 운영)
집 단 상 담 프 레 그 램 운 영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고용센터 인소싱 방식으로 운영)
채 용 박 람 회 지 원	사전·사후 단계별로 매칭 중심의 채용서비스와 구인·구직자에게 직접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자 취업지원 대상별 맞춤형 채용박람회 행사 추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

중장년층 취업지원

-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생애경력설계, 사회참여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
 - 서비스기관에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급, 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 이용

사업구분	지원내용
고령자인재은행(46개소)	5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31개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1:1상담, 재취업 및 창업지원, 생애경력설계, 사회참여 기회 등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생애경력설계서비스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에 대하여 경력진단 및 미래설계를 통한 체계적 재취업 준비 및 적극적인 경력관리 활동 지원



취업·직업정보 등



워크넷 | <http://www.work.go.kr>

- ❑ 구인·구직자에게 인재정보, 일자리정보 등 각종 취업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의 워크넷 운영('98~)
- ❑ 구인·구직정보 제공,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온라인 채용대행 서비스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일평균 76만명이 방문하는 국가대표 취업지원 포털
- ❑ 고용센터·자치단체·새일센터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및 유관기관의 취업업무 지원



직업진로지도 | <http://www.work.go.kr/jobMain.do>

- ❑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집단상담 및 특강)과 직업심리검사(청소년, 성인)의 개발, 진로상담 및 전문강사 교육
-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직업전망, 직업사전 및 신직업 등 직업정보, 직업·취업지원·학과 동영상 제작 및 진로교육 콘텐츠 등 개발 (무료)배포



고용보험시스템 | <http://www.ei.go.kr>

- ❑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관련 지원금 등 고용보험사업 안내
-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서비스 제공



HRD-NET | <http://www.hrd.go.kr>

-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안내,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훈련비용 신청, 자격정보 등 제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피보험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연간지원 한도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기업
훈련비용 연간총액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	훈련비용 연간총액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100%

* 지원 최소금액: 500만원

*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의 300%(대규모기업 130%) 한도까지 지급

* 사업주가 다른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급

지원액 산정 방식

집체훈련·현장훈련	인터넷 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스마트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인터넷 원격훈련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80%	우편원격훈련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80%	스마트훈련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8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50%)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 1,000인 이상 기업 50%)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 1,000인 이상 기업 50%)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 1,000인 이상 기업 50%)

* 원격훈련 훈련생 1인당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

▣ 기간제 등 훈련우대

-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훈련 실시할 경우 비용 추가 지원

☞ 임금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 대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유급휴가 훈련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p>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금 및 훈련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 기업: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8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p>① 인건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 대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p>② 훈련비지원: 집체·현장훈련과 동일</p>

▣ 대체인력 채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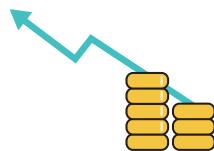
-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임금 지원

- ☞ 지원수준: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 훈련비 및 훈련생 임금은 유급휴가훈련과 동일 기준으로 지원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지원대상	지원내용
<p>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협약기업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공공기관 등)</p>	<p>① 시설·장비비: 연간 최대 15억원까지 총 소요비용의 80%내에서 6년 동안 지원하되, 6년 경과 후에는 차등 지원</p> <p>② 운영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80%) 및 일반 운영비(100%)를 4억원 한도로 지원</p> <p>③ 훈련프로그램개발비: 훈련프로그램개발에 소요되는 비용(100%)을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p> <p>④ 훈련비·훈련수당: 사업주위탁훈련비 환급 방식 등으로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 수강생만 지원 * 고숙련,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훈련 우대 지원</p>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지원

☞ 금속·동력·기계·전기·전자 등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과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15세 이상의 실업자, 비진학예정(취업희망) 고3 재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등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	<p>훈련비 전액과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대상 및 출석일수에 따라 월 최대 216천원~4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p> <p>* 대상별 훈련장려금 지원한도: 고3 216천원, 일반구직자 316천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고3 316천원, 일반구직자 416천원)</p>

신청

-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훈련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적합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 직업훈련포털 HRD-Net(<http://www.hrd.go.kr>) 접속 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정보 등 확인 가능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장비 자금대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실시의 기반이 되는 훈련시설 및 장비 확충을 지원(융자)함으로써 훈련실시 인프라 구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60억 한도로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대부
대부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참여기업, 우수훈련기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연 1% ✓ 직업훈련법인 연 1.5% ✓ 대규모기업, 직업훈련시설, 기타 사업주(단체) 등 연 2%
대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10년 이내(5년 거치 5년 상환) ✓ 장비 평균내용연수(최대 10년,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치기간 경과 후 5년간 연 4회(분기별) 균분 상환

☞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내일 배움 카드 제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 고용가능성 제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p>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대규모 기업 45세 이상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포함), 아직 예정자, 무급 휴직·휴업자, 3년 이상 사업주 훈련을 받지 못한 근로자, 육아휴직 중인 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p>	<p>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수강한 경우 1인당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자비부담분을 제외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으로 지급)</p> <p>* 지원수준: 훈련비용의 100%(정규직 80%), 음식서비스·기타서비스 직종 60%(정규직 50%), 외국어과정 50%, 인터넷과정 100%</p> <p>*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퇴사한 경우 1년)</p>

- 신청

- 카드신청(근로자): 고용센터 또는 HRD-Net(www.hrd.go.kr)으로 신청
- 지원금 신청(훈련기관): 훈련종료 후 고용센터에 신청



- 취·창업을 위하여 훈련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적합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창업을 촉진

지원대상	지원내용
<p>15세 이상의 실업자, 비진학예정(취업희망) 고3 재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등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p>	<p>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대상 및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20~95%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p> <p>* 다만, 취업성공폐기지 2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50%~95%까지 지원하고, 1유형 참여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p>

- 신청

-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훈련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적합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 직업훈련포털 HRD-Net(<http://www.hrd.go.kr>) 접속 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정보 등 확인 가능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도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배우자합산 연간소득금액 8,000만원 초과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신청일 현재 잔여훈련기간에 대하여 1인당 월 200만원 내 분할 대부(1인당 1,000만원 한도) * 연 1% 금리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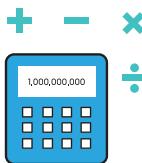
일학습병행제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 형성시키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해당분야에서의 기술력을 갖추고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1년~4년(연간 300~1,000시간 이내)의 일학습병행제 이수를 통해 숙련이 필요한 직무	▼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양성교육 등 훈련 인프라 지원 ▼ 훈련비(S-OJT, OFF-JT), 기업현장교사 수당(연간 400~1,600만원 한도), HRD 담당자 수당(연간 300만원 한도) 및 일학습병행 훈련 지원금(월 40만원 한도) 등 지원

구직급여



지원내용	지원요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1,000,000,000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이직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죄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 인정

☞ **지원수준**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18.1월 현재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하한액 54,216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단, 2017년도 이직자는 상한액 5만원, 하한액 46,584원 적용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이직일 현재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신청방법** 실직 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이후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인터넷)하여 실업 인정 신청 및 취업상담 →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연장급여

-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지시한 사람으로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최대 2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 자격자로서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고 18세 미만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으며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발생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실업크레딧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 일반회계 25% 지원, 본인 부담 25%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을 보유한 자는 제외될 수 있음	구직급여수급자는 고용센터(수급자격 인정 신청시 또는 실업인정신청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가능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당 5,800원 *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광역구직활동비	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숙박료: 실비(1박당 상한액 서울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에 50,000원) 운임: 실비(교통수단별 중등급 수준)
이주비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경우	5톤 이하는 실비(5톤 초과시 5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 7.5톤까지는 실비의 50%) * 사다리차 이외 옵션은 제외



구 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사용 가능(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급여로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넷째 달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지급(1년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지급(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단, 둘째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 200만원 -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복귀 6개월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 육아휴직급여 일부(25%)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frac{\text{통상임금의 } 80\% \times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임금의 1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최초 60일(다태아 75일)</th><th>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th></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td><td>정부가 최대 월 160만원을 지원하고, 통상임금과 160만원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td><td>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160만원)</td></tr> <tr> <td>대규모기업 근로자</td><td>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td><td>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160만원)</td></tr> </tbody> </table> 	구 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정부가 최대 월 160만원을 지원하고, 통상임금과 160만원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1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160만원)
구 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정부가 최대 월 160만원을 지원하고, 통상임금과 160만원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1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160만원)									

7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 되는 사업(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서 제출																																
기준보수 (보험료 및 구직 급여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본인이 선택<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구직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50%*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																																
보험료 납부 절차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h>6등급</th><th>7등급</th></tr></thead><tbody><tr><td>기준보수</td><td>1,540,000</td><td>1,730,000</td><td>1,920,000</td><td>2,110,000</td><td>2,310,000</td><td>2,500,000</td><td>2,690,000</td></tr><tr><td>월 보험료</td><td>34,650</td><td>38,920</td><td>43,200</td><td>47,470</td><td>51,970</td><td>56,250</td><td>60,520</td></tr><tr><td>월 구직급여</td><td>770,000</td><td>865,000</td><td>960,000</td><td>1,055,000</td><td>1,155,000</td><td>1,250,000</td><td>1,345,000</td></tr></tbody></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매월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다만, 만 65세 이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540,000	1,730,000	1,920,000	2,110,000	2,310,000	2,500,000	2,690,000	월 보험료	34,650	38,920	43,200	47,470	51,970	56,250	60,520	월 구직급여	770,000	865,000	960,000	1,055,000	1,155,000	1,250,000	1,345,000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540,000	1,730,000	1,920,000	2,110,000	2,310,000	2,500,000	2,690,000																										
월 보험료	34,650	38,920	43,200	47,470	51,970	56,250	60,520																										
월 구직급여	770,000	865,000	960,000	1,055,000	1,155,000	1,250,000	1,345,000																										

구직급여

● 지급요건



- 비자발적으로 폐업하였을 것(6개월 동안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 감소, 건강악화·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지급수준 및 기간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일~180일까지 지급

〈소정급여일수〉

(단위: 일)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여일수	90	120	150	180

●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직업능력개발지원(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비용의 100%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직종 60%) 훈련장려수당 지원(1일 18천원) - 1인당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고용센터 또는 HRD-Net(www.hrd.go.kr)을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



실업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p>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휴·폐업 가능성이 높아 취업 또는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일반 사업자 (연간소득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p> <p>*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연간소득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대상 및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20~95%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다면,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50%~95%까지 지원하고, 1유형 참여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대상 및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16천원~4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p>* 대상별 훈련장려금 지원한도: 고3 216천원, 일반구직자 316천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고3 316천원, 일반구직자 416천원)</p>	<p>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상담 및 직업 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상담결과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지원</p> <p>* 직업훈련포털 HRD-Net(http://www.hrd.go.kr) 접속 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 정보 등 확인 가능</p>

사업 소개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근로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p>※ 지원제외 사업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또는 공공기관 -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상용】 노동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 【일용】 노동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일당 87,000원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p>※ 지원제외 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고용기간 1개월 미만 노동자는 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p>※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노동자도 지원 (5인 미만 농·림·어업, 합법적인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p>

지원 금 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지급기준 (평균시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35시간	120,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25시간	9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5시간	60,000원
10시간 미만	5시간	30,000원

● 일용 노동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원

월 근로일수	월 평균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22일	130,000원
19일 이상~21일 이하	20일	120,000원
15일 이상~18일 이하	16.5일	100,000원

지급방식

- 연 1회 신청 후 2회분부터는 지급희망일(10일, 20일, 30일)에 따라 매월 자동 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 시 변경신청 반드시 필요
- ‘계좌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희망일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서식

구 분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18년 신규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기 입가 사업장 및 노동자 ⇒ 지원대상 노동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일용노동자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별도 서식)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노동자 최초 지원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노동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허가증, 보유선박 및 선원현황 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EDI, 국민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고용보험EDI,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방문·우편·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명칭(운영기관)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More Information

워크넷

채용정보, 맞춤채용정보, 입사지원관리,
취업뉴스, 직업정보·학과정보 등 제공



고용보험 민원신청

고용보험 민원신청(모성보호, 일용근로신고)
및 제도소개



HRD-Net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과정 검색,
교육훈련 참여방법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훈련기관 평가정보 제공, 개인훈련이력 조회 등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 **1350**
www.ei.go.kr

전국 고용센터 안내 **1350**
www.work.go.kr/jobcenter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ewel.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